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자원봉사자 우대 규정 신설(안 제19조)

○ 다른 조례의 개정: 감면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하

여 관내 시설물 및 평생 학습관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개정안 전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오타자 등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감면 기준은 이에 부합한다고 여겨짐.
- 한편,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경우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본 개정안의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리적인 개정 즉, “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조례나 규칙을 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우리 구(區)에서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기에 해당 위원회와의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11개의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우수지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어 이러한 추세를 따라 장기간 활동한 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49 호
----------	---------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다. 자원봉사자 우대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다른 조례의 개정: 감면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자원봉사진흥”을 “자원봉사 진흥”으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원봉사관련”을 “자원봉사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를”을 “구청장을”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운영 그 밖에”를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 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자원 봉사”를 “자원봉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센터의조직 및 운영 등)”을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에는 소장”을 “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자원봉사진흥”을 “자원봉사 진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가입”을 “공제 가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원봉사보험”을 “자원봉사 보험”으로, “자원봉사보험”을 “자원봉사 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봉사보험”을 “자원봉사 보험”으로, “자원봉사보험”을 “자원봉사 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제가입절차”를 “공제 가입 절차”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을 등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50% 감면의 대상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별표 2 중 구비서류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 서류	1) 감면대상자의 해당증명서 및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의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 병역명문가증 - 우수 자원봉사자증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지역주민들이 자율 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 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 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 자 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 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대가 없이</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15. (생략)</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u>각 호</u>-----.</p> <p>1. ~ 15. (현행과 같음)</p>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4. (생략)

③위원회는 구청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 자원봉사 진흥 -----
----- 마련하여 -----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마련하여 -----

----- “위원회”라 -----
-----.

②-----
-----.

1.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 관련 -----

3.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

----- 구성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
-----.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

차)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 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 ③ (생략)
-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 ⑧ (생략)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 ① (생략)
-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① 센터장-----

-----.

② 센터장-----
----- 30일 전-----
-----.

제8조(센터의 사업)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자원봉사 -----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센터는 센터장 ----- 구
----- 구성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2월 말-----
-----.

③ (생 략)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7조(보험가입)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생 략)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7조(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 가입-----
-----.

1. -----
----- 자
원봉사 보험 -----

----- 자
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자원봉사 보험 -----

-----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
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제 가입
절차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 구청장
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
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
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참여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
공할 수 있다.

1.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센
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
수한 사람

2.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
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
한 사람. 이 경우 감면 대상사
업 및 감면율 등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